

2005. 12. 23(금) 10:00
제12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 ①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②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③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 ④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총 무 위 원 회

①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11. 2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5. 11.21

다. 의안번호 : 제2005 - 73호

라. 상정일자 : 2005. 12. 21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안 제출 이유

○ 예산제도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공무원정원을 673명에서 677명으로 4명을 증원함.
- 부칙 제2조 한시정원 규정을 종전 4명에서 8명으로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3명은 2006.12.31까지, 3명은 2007.6.30까지, 2명은 2007.12.31까지로 각각 조정함.
- 별지의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함.
 - 본청의 정원을 527명에서 531명으로 4명을 증원
 - 6급 1명, 7급 1명, 8.9급 각 1명 증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정원 증원과 관련 행정과내 균형발전담당 2명, 재무과내 복식부기 담당 3명, 기획감사실내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도로부터 한시정원으로 승인받았으나,

도의 승인내용 대로 증원할 경우 과도한 인력이 증원되므로 균형발전 담당은 기존인력에서 보강기로 하고, 복식부기는 3명에서 2명으로 1명을 감원하며, 사업별 예산제도는 2명을 그대로 하여 당초 보고한 정원보다 3명을 감축하여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음.

○금회 한시정원 4명의 한시기간은 복식부기 2명은 2007.6.30까지로, 사업별 예산 2명은 2007. 12. 31까지로 되어 있음.

○ 정원증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원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을 2005.10.20일자 입법예고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②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05. 11. 2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5. 11. 21
- 다. 의안번호 : 제2005 - 74호
- 라. 상정일자 : 2005. 12. 21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수수료와 관련된 제반 법규 및 지침의 개정에 따른 대처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여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원가이하의 수수료는 현실화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수수료의 감면대상자를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광주민주화유공자, 장애인을 추가함(안 제7조 제5호~9호)
- 별표1의 일부 기준요액중 인감, 신상, 사실확인, 지방세, 부동산, 축사, 건설등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삭제 또는 증액하거나 신설함(안 제2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기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반환을 불반환으로 변경한 것은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증지로 하는 것이므로 소인한 것에 대하여는 반환이 불가하여 불반환 한 것이며, 제7조의 제5항~제9항까지의 수수료 감면대상에 신설한 것은 상위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별표 1의 인감증명에 관한 사항은 인감증명법 제19조에 규정(인감증명 발급신청 및 개인신고 각 600원)된 것으로 상위법에 규정한 사항이므로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려는 것이며, 2.신상에 관한 사항과 3.사실 및 실적에 관한사항 중 일부 삭제하려는 것은 민원발급 대상에서 용도가 폐지 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임.

○ 별표 3의 (7) 소유사실 확인, 4.지방세에 관한 사항, 7. 부동산에 관한 사항중 (1)개별공시지가 확인, 11. 건설 등에 관한 사항 중 (1)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 신청건은 수수료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자체 원가계산에 의거 원가계산 범위내에서 인상한 것으로 확인됨.

○ 기타 신설되는 민원의 수수료는 관련법과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적시된 사항이나 거창군의 조례에 누락되어 있어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임.

○ 동 개정조례안중 상향조정되거나 신설되는 일부 수수료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 경우 「거창군 법무행정 처리규

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간신문 등에 20일 이상 입법예고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2005.11.4 경남신문 외 3개 지역일간지에 예고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③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1. 검토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05. 11. 2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5. 11. 21

다. 의안번호 : 제2005 - 77호

라. 상정일자 : 2005. 12. 21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 거창군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지원내용은 둘째이상 자녀 출산장려금, 영유아 무료접종, 임부에 대한 철분제와 출생아에 대한 용품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6조)

○ 지원대상은 출생의 경우 출생일 기준 부모가 1년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영유아와 임부의 경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제한함(안 제4조)

○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장려금 신청은 읍면장에게 지원여부 결정은 군수가 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와 젊은 층의 역외 유출로 인하여 지역인구가 격감하고 있어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안 제4조의 지원대상자 범위도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 현재 부모가 1년 전부터 거주한 자로 제한 것은 지나치게 긴 것으로 실제 거창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려는 자도 지원혜택에서 제한되므로 전입을 기피할 우려가 있음.

○ 안 제5조의 지원규모의 조항은 동 조례의 가장 중요사항인 것으로 출생장려금 지원규모를 규칙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조례로서 규정해야 할 사항임.

○ 조례안 제출일 현재까지 규칙안을 제정하지 않았으나 집행부의 지원규모는 둘째는 30만원, 셋째이후는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2005.11 현재 출산이 둘째이는 146명, 셋째는 55명으로 연간 200명 이상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할 경우(부결 또는 심의보류) 출산장려비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못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선심성 정책으로 분류되어 선거기간동안 대상주민의 혜택이 제한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사항만 우선 조례로 의결한 후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를 거쳐 필요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으로는 미흡한 것이나 조례를 심의보류할 경우 승인된 예산에 대하여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인하여 제한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가결 후 개정기로 함

6. 수정안 요지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둘째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둘째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신생아의 주소지를 거창군에 두어야 한다.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군수는 본 조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둘째아이 출산장려금 : 30만원 2. 셋째아이부터 출산장려금 : 100만원 3. 둘째아이부터 출산용품 지원 : 10만원 상당 물품 ②군수는 매년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생략 ②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자료, 기타 행정자료와 현지확인을 거쳐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생략 ②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즉시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4]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 검토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05. 11. 2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5. 11. 21

다. 의안번호 : 제2005 - 78호

라. 상정일자 : 2005. 12. 21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안이유

-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의 자료수집, 보존, 열람, 대출, 부속시설 이용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자료실의 열람시간은 09:00~18:00, 자유열람실은 09:00~23:00, 휴관일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매주 월요일로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자료대출, 자료의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회수불능도서 처리 기준자료 등 자료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9조)
- 부속시설인 시청각실은 1회 3시간기준 50,000원으로, 다목적실은 30,000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냉난방실 이용과 초과시에 별도 가산토록 규정함(안 제12조)
-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의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안 제11조의 사용시간이 09:00부터 18:00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도서관의 부속시설인 다목적실과 시청각실은 주간보다 야간에 이용하는 군민이 많을 것이므로 22:00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료를 보면 시청각실(3층 44평)에 대하여 1회 3시간기준 50,000원과 별도의 냉난방시설사용료 20,000원을, 다목적실(지하 26평)은 1회 3만원과 냉난방시설사용료 15,000원을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유사 군립공공 시설의 사용료에 비하여 다소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 거창군립 유사시설인 복지회관의 소강당(45평)의 경우 1회 사용료(3시간)가 주간 10,000원, 야간 15,000원으로 하되 3시간 초과시 1시간 3,000원과 토.일.공휴일 20% 가산토록 되어 있으며,

- 문화센터 전시실의 경우 대전시설(41평) 1회(3시간) 사용료가 16,400원, 소전시실(18평) 7,200원과 냉난방실 1회 10,000원으로 되어 있음.

○ 안 제16조의 제2항에서 위원위촉과 관련 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군소속 공무원이므로 위촉대상이 아닌 임명으로 규정해야 할 것임.

○ 동 시설도 민간위탁 가능한 시설이므로 향후 민간위탁 가능한 시설이므로 필요할 경우 위탁운영 시킬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열람실을 23:00까지 개방하는 것은 기 설립운영중인 거창군도서관과의 운영시간이 맞지 아니하는 문제와 사설 도서관의 경영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시설사용료 납부기한을 사용개시 5일전까지로 한 것도 납부기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부속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인하할 필요성이 있으나, 일정시점 경과 후 검토하기로 하고, 기타 위원위촉사항과 시설의 민간위탁 조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과 같이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협의되어 수정가결기로 함.

6. 수정안 요지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열람 및 이용시간) ①~② 생략 1. 자료실 : 09:00~18:00(단, 토·일요일은 09:00~17:00) 2. 자유열람실 : 09:00~23:00	제4조(열람 및 이용시간) ①~② 생략 1. 자료실 : 09:00~18:00(단, 토·일요일은 09:00~17:00) 2. 자유열람실 : 09:00~22:00
제12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③생략 ④시설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개시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③생략 ④시설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개시 <u>2일전</u>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위원은 소장과 문화계, 교육계 및 이용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④ 생략	제16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위원은 다음 각호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문화센터소장 2. 교육계 및 문화계 전문인사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④ 생략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위탁운영)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마음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